

#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60호 2020. 3. 31.(화)

## 훈 령

- 남해군 훈령 제331호 남해군 성희룡 예방 지침 전부개정훈령 ..... 1
- 남해군 훈령 제332호 남해군 정보화 사업의 추진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 10

## 고 시

- 남해군 고시 제2020-4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 11

## 공 고

- 남해군 공고 제2020-402호 남해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12
- 남해군 공고 제2020-427호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분묘개장공고(2차) 19
- 남해군 공고 제2020-441호 남해군 스페이스 미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
- 남해군 공고 제2020-442호 2019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 30
- 남해군 공고 제2020-443호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숙박시설용지 민간사업자 공모 62
- 남해군 공고 제2020-450호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5
- 남해군 공고 제2020-460호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74

회 략									
-----	--	--	--	--	--	--	--	--	--

훈 령

남해군 훈령 제331호

**남해군 성희룡 예방 지침 전부개정훈령**

남해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성희룡 예방 지침 전부개정훈령을 발령한다.

2020년 3월 31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성희롱 예방 지침 전부개정훈령

남해군 성희롱 예방 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남해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남해군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석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근절 의지 및 가해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남해군 소속 직원(군수와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이하 “피해자등” 이라 한다)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예방교육)** ① 군수는 매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 조치
4.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신규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부서장 이상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담당 부서장은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상담창구)** ①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담당 부서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인사 또는 감사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업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대책 수립과 이행
5.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및 사건 접수 대장과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사이버신고센터 운영)**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군수는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의 교육 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새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6조1항의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의 고충처리 업무지원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7조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고충상담 신청)** ①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을 고충상담창구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들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등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인격·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⑤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의 진행상황을 피해자들에게 서면, 정보통신망,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피해자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군수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가해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자들에게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4. 성과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등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③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조사의 종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5조(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성희롱·성폭력 업무담당 국장, 과장
2. 위촉직 위원 : 성희롱·성폭력 분야의 전문가 및 공무원노동조합 남해군지부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안건의 처리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신고인은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 위원은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남해군 소속 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징계)** ①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군수는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 제18조(재발 방지 조치 등)** ① 군수는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발 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훈령 제332호

## 남해군 정보화 사업의 추진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남해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정보화 사업의 추진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발령한다.

2020년 3월 31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정보화 사업의 추진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남해군 정보화 사업의 추진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 「남해군 지역정보화 조례」에 따라 남해군”을 “규정은 남해군”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이하 '사전협의지침'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전협의지침”을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으로 한다.

제10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1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0 - 4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5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화천(지방하천)
2. 성 명 : 이현\*
3. 주 소 :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
4. 점용목적 : 단독주택 진입로 및 배수관설치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56-1, 1171-3번지
6. 점용면적 : 33㎡
7. 점용기간 : 2020. 3. 24. ~ 2025. 3. 23.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0 - 402호

남해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 제정이유
  - 불법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 및 의견진술에 대한 면제 결정  
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 3. 주요내용
  - 가.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 인 원 : 7명 이내
      - 당연직 : 3명 (교통관련 부서 및 감사, 장애인 부서 공무원)
      - 위촉직 : 4명 (남해경찰서 교통부서 공무원 및 교통관련 단체 임직원 또는 회원)
  - 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 구체화(과태료 면제 기준)

4. 제정 규칙안 :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사항 : 해당 없음

나. 입법예고 : 2020. 3. 16. ~ 4. 6. (21일간)

6.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간 : 2020년 4월 6일까지

※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456, 팩스 055-860-3708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고시공고” 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규칙 제 호

### 남해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자의 의견진술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남해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의견제출)** ① 의견진술인은 의견제출기간에 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의견진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견진술서를 받으면 내용과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외부위원을 1/2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
2. 감사 및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장 또는 담당팀장
3. 교통관련 기관 공무원, 단체 임직원 또는 회원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경우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별표의 과태료 면제 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2. 증명자료가 없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의견진술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가 없는 단순 의견(잠시주차, 선처 바람 등)은 일괄 검토 후 부과 처리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및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및 구비서류(제2조제2호 관련)**

구 분	주요 처리기준	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나 관련한 차량	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 병원 내원 및 방문, 약국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시 등
	○ 국가 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이사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등
	○ 택배 및 화물 등 물품 승하차(생계형차량) ※ 단, 20분 이내 허용	거래장(운송장) 사본 세금계산서 등 입증서류
	○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주차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에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 등
	○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원(경찰서발급)
	○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 단속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 긴급자동차의 경우: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 유세차량 (선거 유세기간 중에만 해당)	선관위발급 차량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 (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노점상 단속, 현금수송 등)	관련기관 공문서
	○ 취재차량	협조공문서, 기자증 사본 보도내용 사본 등
	○ 행사지원 ※ 행사지원차량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	행사관련 공문 출장명령서 사본
○ 차량고장 :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차량정비내역서, 견인내역서 수리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등	

\*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0 - 427호

## 분묘개장공고(2차)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편입 토지 내 분묘를 개장하고자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2차 개장 공고 하오니 아래 신고처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 공고인 : 경상남도 남해군수

1. 분묘소재지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266-2, 1기
2. 개장사유 :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3.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 무연분묘 안치 : 경남 남해군 남해추모누리 봉안당/봉안 후 10년간 안치
4. 공고기간 : 2차 공고일로부터 60일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이장)처리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6. 공고인 연락처
  - 공고인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수
  - 연락처 : 055-860-3291(재난안전과 방재복구팀)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의 관계서류(제적등본, 족보,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 연고자 또는 관리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자가 개장하겠습니다.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거나 누락된 분묘 또는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같음합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0 - 441호

## 남해군 스페이스 미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스페이스 미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5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스페이스 미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2. 제정이유

남해군 스페이스 미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해군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성화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목적, 위치, 정의(안 제1조~안 제3조) : 시설물의 일반적인 사항
- 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안 제12조)
  - 주요시설의 종류, 관리운영의 주체, 관람료 등
- 다. 시설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13조~안 제21조)
  - 대관허가, 창작스튜디오 입주, 시행규칙

####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간 : 2020년 4월 14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경남 남해군·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 관광경제국 문화관광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8612~8613 팩스 055-860-3748  
전자우편 kimyk77@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자우편, 직접 방문

#### 5.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 (☎860-86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스페이스 미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스페이스 미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남해군 스페이스 미조는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254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페이스 미조”란 남해군수산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던 구 제빙창고를 지역민과 관광객의 문화·예술 향유 및 교류를 위해 재생한 곳으로 전시·공연·체험·판매 등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말한다.
2. “창작스튜디오”란 군수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예술작품을 창작·판매하는 창작작업공간을 말한다.

**제4조(사업)** 스페이스 미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입주작가 선정 및 각종 예술 창작 지원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4. 스페이스 미조 시설 및 부속시설 관리·운영
5. 그 밖에 스페이스 미조의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스페이스 미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본시설 : 전시실, 공연장, 창작스튜디오, 야외 및 옥상정원 등
2. 부대시설 : 식당, 커피숍, 기숙사 등

**제2장 운영**

**제6조(관리·운영)** ① 스페이스 미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스 미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휴관일)** 스페이스 미조 전시실·공연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 당일 및 추석 당일
3. 안전점검이나 개·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전시품 교체·공연장 설치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관람시간)** ① 스페이스 미조 전시실·공연장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관람료)** ① 군수는 스페이스 미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시실·공연장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수탁자 또는 대관자가 주최하는 전시·공연에 대한 관람료를 받으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결정한 경우 결정한 관람료를 남해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10조(관람료 감면)** 남해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관람료 면제
  - 가. 국민 또는 외교사절단과 수행하는 사람
  - 나.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 다.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영유아
  - 라. 그 밖에 군수가 관람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관람료 경감(50%)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만,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인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라. 주민등록상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관련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마. 65세 이상 노인

바.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만18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제11조(관람료 반환)** 군수와 수탁자 또는 대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스페이스 미조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반환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반환
3. 매표 즉시 관람자의 사정으로 관람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반환
4. 그 외의 반환요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2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2. 인화물질·위험물 또는 흉기를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상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3장 대관 및 입주

**제13조(대관허가)** ① 전시·공연·행사 등을 위하여 스페이스 미조의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스페이스 미조 대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대관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스페이스 미조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관을 허가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스페이스 미조 대관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어 주어야 한다.

**제14조(대관허가의 우선순위)** 스페이스 미조를 대관하고자 하는 사람이 둘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탁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순수예술활동 및 행사
3. 각급 교육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단체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단체행사
5. 그 밖의 경우 접수 순서대로 정하되 전시·공연실적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대관허가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 취소, 사용정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관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
3.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대관료)** ① 제13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관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관내 문화예술 관련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사용목적이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7조(시설의 설치)** ① 대관자가 허가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대관자 부담으로 한다.

② 대관자는 허가기간 만료와 동시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가 제2항의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라 대관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창작스튜디오 입주) ①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입주자”라 한다)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주를 허가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창작스튜디오 입주자는 별표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창작스튜디오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기숙사 운영) ① 군수는 수탁자 및 입주자의 휴식 및 정보교류 공간 지원을 위하여 스페이스 미조 안에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장 보칙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해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스페이스 미조 사용료 및 반환기준

1. 대관(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용도	기준	금 액	비 고
해박요 미조	다목적홀	오전	40,000	오전 : 09:00~12:00 오후 : 13:00~18:00 종일 : 09:00~18:00 * 준비·철수기간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오후	40,000	
		종일	100,000	
미조 홀 2	전시실	오전	40,000	
		오후	40,000	
		종일	100,000	
오픈스튜디오	창작스튜디오	30일	250,000	* 공공요금 포함

2. 대관(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	환불사유(환불 신청일)	환불기준	비고
시 설 사용료	운영자 귀책사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100퍼센트	
	사용 개시 10일 전까지	100퍼센트	
	사용 개시 5일 전까지	80퍼센트	
	사용 개시 3일 전까지	70퍼센트	
	사용 개시 1일 전까지	50퍼센트	

[별지 제1호]

스페이스 미조 대관(변경) 허가 신청서

신 청 인	단 체 명			대표자명			
	주 소						
	성 명 (신 청 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유선번호			이동전화		
FAX				e-mail			
신 청 사 항	공연(전시)명						
	사용 시설명	<input type="checkbox"/> 해박요 미조(다목적홀) <input type="checkbox"/> 미조홀 2 <input type="checkbox"/> 그 외 (        )					
	사용자 시설(장비)						
	대관 세부 현황						
	준비사용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공연(전시)사 용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철수사용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관람예상 인 원	약(        )명 / 1일					
	관 랑 료						
대 관 료			대관료 감면 여부(사유)				
공연(행사) 주요 내용	※ 첨부 : 공연 / 행사계획서						

남해군 스페이스 미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스페이스 미조 대관(변경) 허가서

사 용 자	단 체 명			대표자명					
	주 소								
사 용 내 역	공연(전시)명								
	사용 시설명	<input type="checkbox"/> 해박요 미조(다목적홀)		<input type="checkbox"/> 미조홀 2		<input type="checkbox"/> 그 외 ( )			
	사용자 시설(장비)								
	대관(변경) 허가 세부현황								
	준비사용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공연사용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철수사용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관람예상인								
	관 랐 료								
	대 관 료	대관료							
대관료 내역									

허 가 조 건

1. 「남해군 스페이스 미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그 밖의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스페이스 미조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4. 공연장 내에서는 음주 및 흡연(전자담배 포함)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5.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대관자가 설치하였거나 부착한 각종 시설물과 홍보물 등은 허가기간 종료 즉시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자가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7. 행사 중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대관자가 수거·처리하여야 합니다.
8. 대관료는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동 취소처리 됩니다.

남해군 스페이스 미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인)

남해군 공고 제2020 - 442호

### 2019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및 운영성과 등을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9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합니다.

2020. 3. 25.

남 해 군 수

#### 1.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 ◆ 2019년도에는 자연재난(풍수해)이 4회 발생하여 피해는 100건 594백만원이며, 복구는 100건 835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 자연재난(풍수해)은 4회 발생하였으며 피해는 594백만원이며 복구는 100건, 835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재해복구는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 재난발생현황은 자연재난(풍수해)이 가장 빈도 높게 발생하였고, 자연재난(풍수해)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실적으로는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은 1개 과 19명으로 5년 평균보다 2명 증가하였습니다.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는 8종으로 302개소에 설치되었으며, 5년 평균보다 10개소 증가(감소)하였고, 지난해 보다 13개소 증가하였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적립은 당해연도 확보 기준액은 143백만원이고, 143백만원 확보되어 100% 확보되었습니다.
  - 최근 5년간 평균 124백만원 보다 19백만원 증가하였고, 지난해 보다 8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확보된 재난관리기금을 5년 평균 189백만원 사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64백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276원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 그 밖에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61개 시설 중 19개 시설이 내진성능 확보 또는 내진보강 완료되어 31%내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금년도의 공공건축물 내진보강은 4건 76백만원 예산이 활용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 군의 재난관리역량은 재난예방 및 재난관리기금 확보 등은 추진실적이 우수하고,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등은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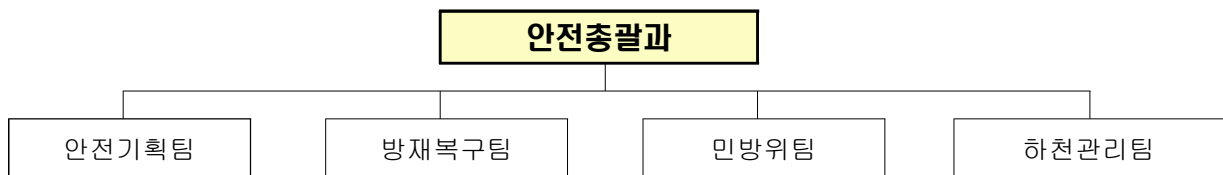
###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일시	재난(피해) 원인	피해내용	복구내용	추진사항
7. 20	태풍 다나스	-공공시설 28개소 -사유시설 1개소	-공공시설 28개소 -사유시설 1개소	복구완료
9. 6	태풍 링링	-공공시설 22개소 -사유시설 7개소	-공공시설 22개소 -사유시설 7개소	복구완료
9. 21	태풍 타파	-공공시설 15개소 -사유시설 15개소	-공공시설 15개소 -사유시설 15개소	복구완료
10. 10	태풍 미탁	-공공시설 8개소 -사유시설 4개소	-공공시설 8개소 -사유시설 4개소	복구완료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실적

#### ①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가.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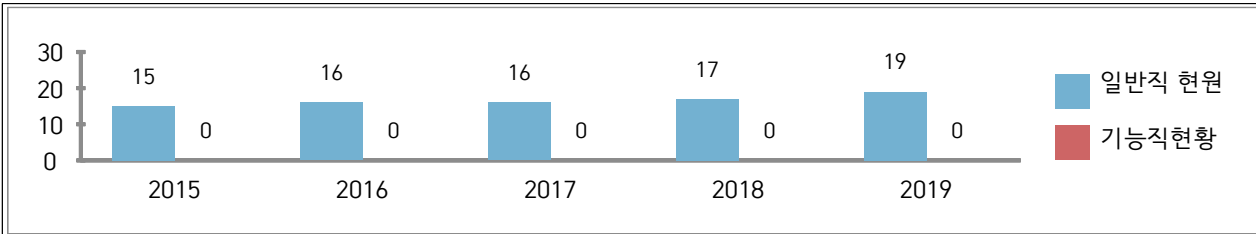


나. 정원

과 별	계	일 반 직							기능직	기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19	19	0	1	4	4	7	3		
	현원	19	19	0	1	4	5	4	5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일반직 현원(인원)	15	16	16	17	19
기능직 현원(인원)	-	-	-	-	-



☞ 일반직 현인원의 증감 등 구체적 내용 설명

- 2018. 9월 남해군 조직개편으로 하천관리팀 신설로 현원 증가
- 2019년 인원 결원 없이 정원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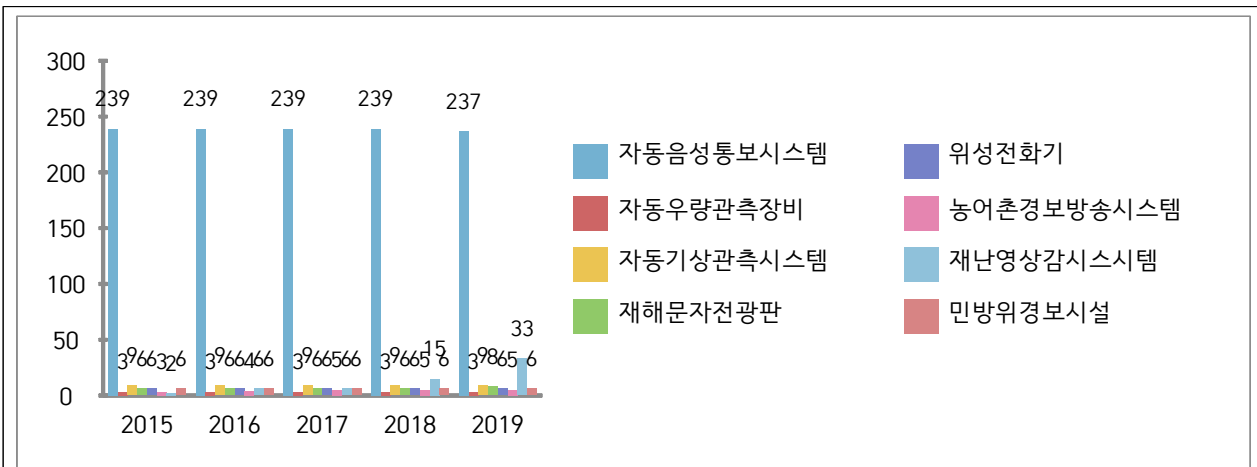
②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가. 현황

구 분	개소	설치장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37	전 읍.면
자동우량관측장비	3	상주, 삼동, 미조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9	전 읍.면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33	전 읍.면
재해문자전광판	8	남해, 상주, 송정, 사촌, 두곡 설리, 삼동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6	남해, 상주, 삼동, 미조, 남, 창선
위성전화기	6	남해, 상주, 삼동, 미조, 남, 창선
농어촌 경보방송 시스템	5	이동, 서면, 창선, 고현, 설천
기타	7	위성전화(재난안전상황실), 위성DMB(조도)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39	239	239	239	237
자동우량관측장비	3	3	3	3	3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9	9	9	9	9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2	6	6	15	33
재해문자전광판	6	6	6	6	8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6	6	6	6	6
위성전화기	6	6	6	6	6
농어촌 경보방송 시스템	3	4	5	5	5



☞ 증감원인

-재해문자 시스템 설치 기존 15개 -> 33개

③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가.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 현황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재난안전관련 분야) 교육]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고
2019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 및 정책설명 워크숍	2.14 ~2.15	행정안전부	2	
사회재난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2.21 ~2.22	행정안전부	4	
2019년도 동원자원조사 담당자 교육	2.25	경남도청	3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고
2019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시군 교육	2.27	행정안전부	1	
2019년 민방위 경보담당공무원 직무교육	2.27	경남도청	7	
2019년도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3.19	경남도청	13	
'19년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워크숍	4.26 5.09	행정안전부	4	
재난배상책임보험 담당자 실무 교육	5.17	행정안전부	1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인 보수교육	5.23	경상남도	1	
2019년 복구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6.03 ~6.04	행정안전부	3	
2019년 사회재난 복구지원 교육 및 NDMS 훈련(1차)	7. 9	경상남도	1	
2019년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시군 교육	9.25	행정안전부	1	
2019년 사회재난 복구지원 교육 및 NDMS 훈련(3차)	10.18	경상남도	1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전산실습교육	11.06	행정안전부	1	
안전정보 활용확대 관련 워크숍	11.07 ~11.08	행정안전부	1	
2019년 재난업무 담당공무원 워크숍	11.14 ~11.15	행정안전부	3	
지자체 내진업무 담당자 대상 내진보강사업 실무교육	11.22	행정안전부	2	
2019년 재난예방안전대책 주요 업무 연찬 워크숍	11.21 ~11.22	행정안전부	2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경진 대회 및 워크숍	11.28 ~11.29	행정안전부	1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임무교육	03.25	상황실	33	상반기 총회	안전총괄과	
안전교육	05.16	창원	3	직무능력 교육	행정안전부	
임무교육	10.05	상황실	31	하반기 총회	안전총괄과	

[안전모니터봉사단에 대한 교육·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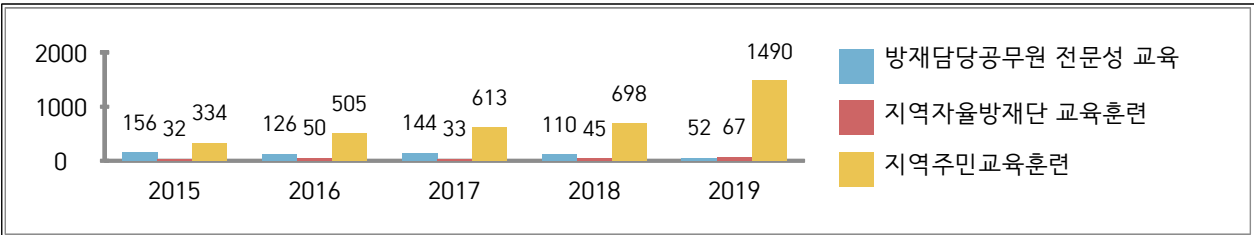
교육/ 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내 용	주관	비고
해	당	없	음			

[재난관리에방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 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내 용	주관	비고
화재대피	3. 20.	홈마트	100	다중이용시설 화재대피훈련	남해군	
화재대피	5. 29.	보물섬 시네마	50	다중이용시설 화재대피훈련	남해군	
2019 주부민방위 기동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8. 20.	종합사회 복지관	40	재난 및 비상 대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남해군	
전국 화재대피 훈련	9. 25.	보물섬 시네마, 대형마트, 고층건물	500	화재대피훈련	남해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0. 28.	남해병원	120	지진에 따른 화재 대응 현장훈련	남해군	
청사불시 화재대피 훈련	10. 29.	남해군청	250	대피훈련 및 화재 행동요령 등 교육	남해군	
민방위 훈련	10. 30.	보물섬 시네마 및 읍·면사무소	350	지진대피훈련	남해군	
다중이용시설 재난대피훈련	10. 30.	남해공용 터미널	30	소방합동대피훈련	남해군	
재난취약시설 화재 대피훈련	10. 30.	남해노인 복지회관 종합사회 복지관	50	화재대피 자체훈련을 통한 재난대응능력 향상	남해군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방재담당공무원 전문성 교육(인원)	156	126	144	110	52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인원)	32	50	33	45	67
지역주민 교육·훈련(인원)	334	505	613	698	1,490



☞ 교육·훈련 참석인원의 증가원인 (교육·훈련 참석인원의 증감원인 등)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로 재난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교육 및 훈련 인원 증가

나. 안전모니터봉사단 제보·처리 실적

◇ 제보·처리 실적 현황

봉사단원(인원수)	제보실적(건)	처리실적(건)			비 고
		완료	진행	불가	
해당 없음					

다. 재난관리 관련 언론홍보

[현장홍보 실적(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 등)]

연번	행사명	주요내용	행사일시	장소	참석인원	비고
1	안전한 설 명절 보내기 안전문화 캠페인	설 명절맞이 주민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	1. 31	전통시장 일대	30	
2	해빙기 안전점검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2. 17	관내 일원	9	

연번	행사명	주요내용	행사일시	장소	참석 인원	비고
3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따른 자율안전점검 홍보 캠페인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주택용 자율안전점검표 활용 점검 등	3. 27.	군내 다중이용 시설 등	20	
4	제5회 국민안전의 날 캠페인 실시	안전신문고 활용법 봄철 산불예방 및 화재발생 시 대응 요령 홍보 등	4. 19.	전통시장 일대	40	
5	주부민방위기동대 해수욕장 정화활동 및 홍보캠페인	비상대비 및 생활안전 홍보	7. 5.	상주 해수욕장	20	
6	7월 안전문화 캠페인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안전신문고 홍보 등	7. 12.	송정 솔바람 해변	20	
7	남해군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소화전 주변 적색표시 구간 과태료 상향 등	8. 1.	남해읍 사거리	20	
8	안전한 추석 명절 보내기	추석 명절맞이 국민안전의식 고취 안전사고 예방	9. 1. ~9. 11.	관내일원	30	
9	주부민방위기동대 생활안전교육 및 홍보캠페인	생활안전 홍보 (풍수해보험 관련 홍보물 배부)	11. 22.	남해읍	10	

[언론 보도 및 기고실적(신문, 방송 등)]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일시	언론사	비고
1	상반기 하천시설물 점검 실시	안전점검	1. 7.	창원일보 경남매일신문 경남도민신문 뉴스경남 전국매일신문	
2	아산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착공	시책홍보	1.16.	경남일보 뉴스경남 경남도민신문	
3	남해군, 동절기·설 연휴 대비 상수도시설 안전점검	안전점검	1. 22.	경남매일 경남일보 뉴스경남 경남연합일보	

# 남 해 군 공 보

(38) 제 660 호

2020년 3월 31일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일시	언론사	비고
4	남해군, 설 연휴 종합대책 시행	시책홍보	1. 23.	전국매일신문	
5	남해군, 하천 위법행위 집중단속 실시한다	안전점검	1. 24.	경남열린뉴스 중부뉴스통신	
6	남해군, 설 명절 대비 재난취약시설 특별 안전점검	안전점검	1. 25.	경남연합일보	
7	남해군, 덕신소하천 정비사업 박차	시책홍보	1. 28.	경남매일 뉴스경남 경남연합일보 경남도민신문 전국매일신문	
8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안전시설 대폭 확충	시책홍보	1. 28.	뉴스경남 창원일보 한남일보 전국매일신문	
9	즐거운 설 명절, 안전부터 챙기세요	안전홍보	1. 31.	중부뉴스통신 경남열린뉴스	
10	남해군,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시책홍보	2. 15.	경남연합일보	
11	남해군, 해빙기 안전사고예방 '총력'	안전점검	2. 17.	지역신문 인터넷 신문	
12	남해초 안전진단 등 해결책 마련 위해 공청회 연다	시책홍보	2. 28.	경남도민신문 한남일보 경남매일 경남일보	
13	남해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추진	시책홍보	3. 4.	창원일보	
14	남해군, 공공하수처리장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시책홍보	3. 8.	뉴스경남	
15	남해군 '민방위의 날' 전국 화재대피훈련	훈련홍보	3. 14.	경남연합일보	
16	남해군, 국가안전대진단 자율안전 점검표 배포	시책홍보	3. 20.	창원일보 경남연합일보	
17	남해군, 아산4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시책홍보	3. 25.	지역신문 인터넷 신문	
18	남해군, 감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용역 착수	시책홍보	3. 27.	경남도민신문 한남일보 뉴스경남 전국매일신문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일시	언론사	비고
19	남해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속도'	시책홍보	4. 1.	지역신문 인터넷 신문	
20	남해군,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 비상체계 돌입	시책홍보	4. 2.	경남매일 한남일보	
21	남해군, 상반기 방법용 CCTV 설치 완료	시책홍보	4. 3.	뉴스경남	
22	노영식 남해부군수,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점검 나서	안전점검	4. 4.	뉴스경남 전국매일신문 경남연합일보	
23	노영식 남해부군수, 산불 예방 현장점검 나서	안전점검	4. 10.	경남일보 경남매일 경남도민신문	
24	남해군,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난 대비하세요”	시책홍보	4. 12.	지역신문 인터넷 신문	
25	장충남 남해군수, 하천정비 사업장 현장점검	안전점검	4. 15.	경남일보 뉴스경남 한남일보	
26	남해군,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주민설명회 개최	시책홍보	4. 16.	경남매일 전국매일신문 경남도민신문 한남일보 뉴스경남	
27	남해군, 산불예방 합동캠페인 실시	안전홍보	4. 17.	뉴스경남	
28	장충남 남해군수, 여름철 대비 급경사지 현장점검 나서	안전점검	4. 18.	월간지리산	
29	남해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촉진 전략회의 개최	상황대비	4. 29.	한남일보	
30	국도 19호선 남해 상주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3차 주민설명회 개최	시책홍보	4. 29.	뉴스경남 한남일보	
31	남해군,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실시	시책홍보	5. 15.	경남연합일보 전국매일신문 한남일보 경남도민신문 뉴스경남	
32	남해군, 국가위기대응연습 실시한다	상황대비	5. 22.	창원일보 경남연합일보	



# 남 해 군 공 보

(40) 제 660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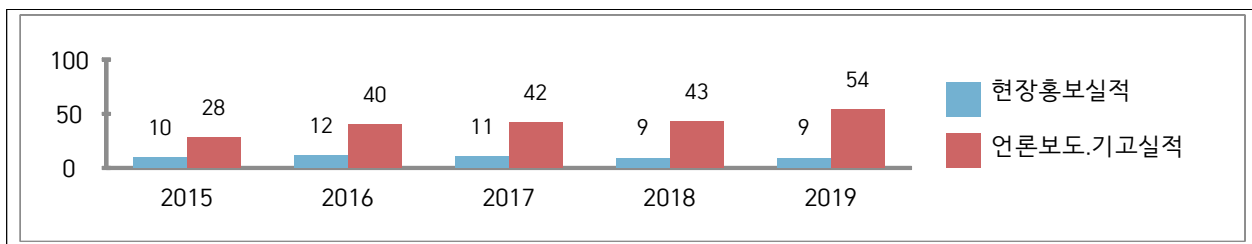
2020년 3월 31일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일시	언론사	비고
33	남해군, 우기철 대비 급경사지 안전관리 점검	안전점검	5. 25.	지역신문 인터넷 신문	
34	남해군, 우기철 급경사지 안전관리 점검 '총력'	안전점검	5. 27.	뉴스경남	
35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 시연회 개최	시책홍보	6. 3.	뉴스경남	
36	풍수해 대비 하수처리시설 안전점검 실시	안전점검	6. 19.	창원일보	
37	장충남 남해군수, 집중호우 대비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안전점검	6. 27.	경남일보 경남도민신문	
38	남해군 폭염대책 추진, 무더위쉼터 일제 정비	시책홍보	7. 8.	지역신문 인터넷 신문	
39	농어촌 보안등, 한번 봐 주세요	시책홍보	7. 11.	경남연합일보 전국매일신문 한남일보 경남도민신문	
40	남해군, 태풍 '다나스' 대비체제 마련	상황대비	7. 19.	지역신문 인터넷 신문	
41	남해군, 폭염 속 무더위쉼터 점검·피해예방 힘써	안전점검	7. 23.	지역신문 인터넷 신문	
4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추진	시책홍보	8. 2.	뉴스경남 한남일보	
43	남해군, 폭염 피해 확산방지 '총력'	시책홍보	8. 3.	지역신문 인터넷 신문	
44	태풍 프란시스코 대비 비상체제 돌입	상황대비	8. 6.	지역신문 인터넷 신문	
45	주부민방위기동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교육실시	8. 22.	창원일보 뉴스경남 경남연합일보 전국매일신문	
46	민박사업자 소방안전시설 개선 캠페인	안전홍보	9. 18.	창원일보 경남연합일보	
47	가을철 농번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철저	안전홍보	9. 24.	경남연합일보	
48	태풍 미탁 대비 비상체제 돌입	상황대비	10. 2.	인터넷지역신문	
4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한다	상황대비	10. 17.	경남신문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일시	언론사	비고
50	남해군 '복합재난 훈련' 펼쳐	훈련홍보	10. 30.	창원일보 뉴스경남 한남일보 경남연합일보	
51	민방위의 날 지진대피 훈련 실시	상황대비	11. 1.	뉴스경남	
52	생활안전 정책 세미나 개최	시책홍보	11. 14.	경남일보 한남일보	
53	생활안전 정책 세미나 열렸다	시책홍보	11. 19.	뉴스경남 경남도민신문	
54	남해군, 재난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토론회 열린다	시책홍보	12. 10.	뉴스경남 창원일보 한남일보 경남신문 경남연합일보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현장홍보실적(횟수)	10	12	11	9	9
언론보도·기고실적(횟수)	28	40	42	43	54



☞ 현장홍보 및 언론보도·기고의 증가원인

- 재해·재난에 대처하는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현장 캠페인과 주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언론 홍보 등 지속적으로 증가
-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즉각적인 언론 보도 실시

④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가.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가)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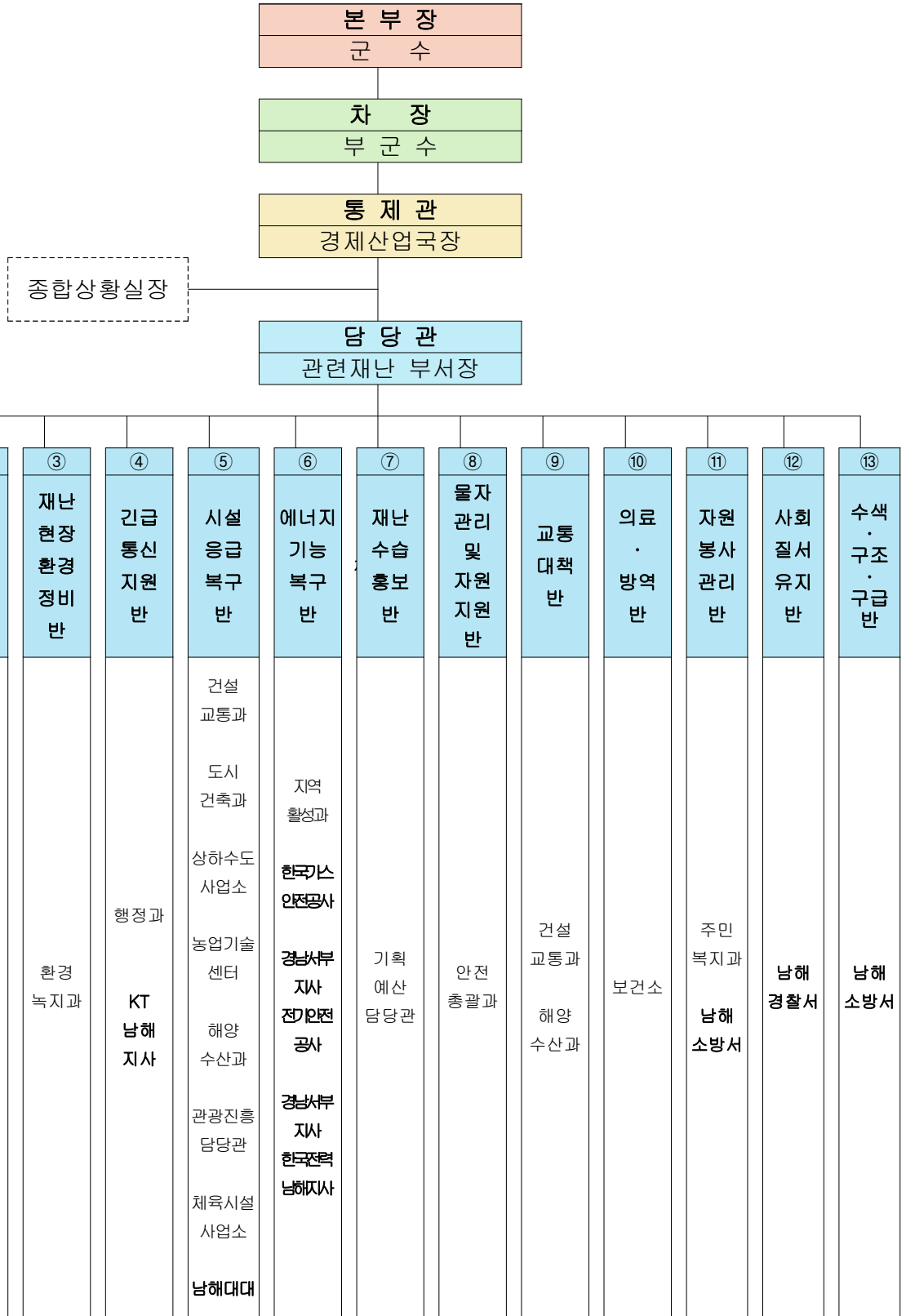
[안전관리기구의 기능]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안전관리위원회 (지역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군수</li> <li>• 위원 : 16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li> <li>•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 계획안의 심의</li> <li>•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 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 관리업무의 협의·조정</li> <li>•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li> <li>•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li> </ul>
안전정책실무 조정위원회	같은 법 제11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국장</li> <li>• 위원 : 13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에 부칠 의안 검토</li> <li>•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li> </ul>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같은 법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본부장 : 군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li> <li>•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li> <li>•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li> <li>•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ul>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법 제7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 : 10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지식을 이용한 안전점검 및 현장 상담</li> <li>•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 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자문</li> <li>•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자문</li> </ul>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같은 법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 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li> </ul>
재난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li> <li>군수→도지사→안전행정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li> </ul>
재난 신고	같은 법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li> <li>군수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li> </ul>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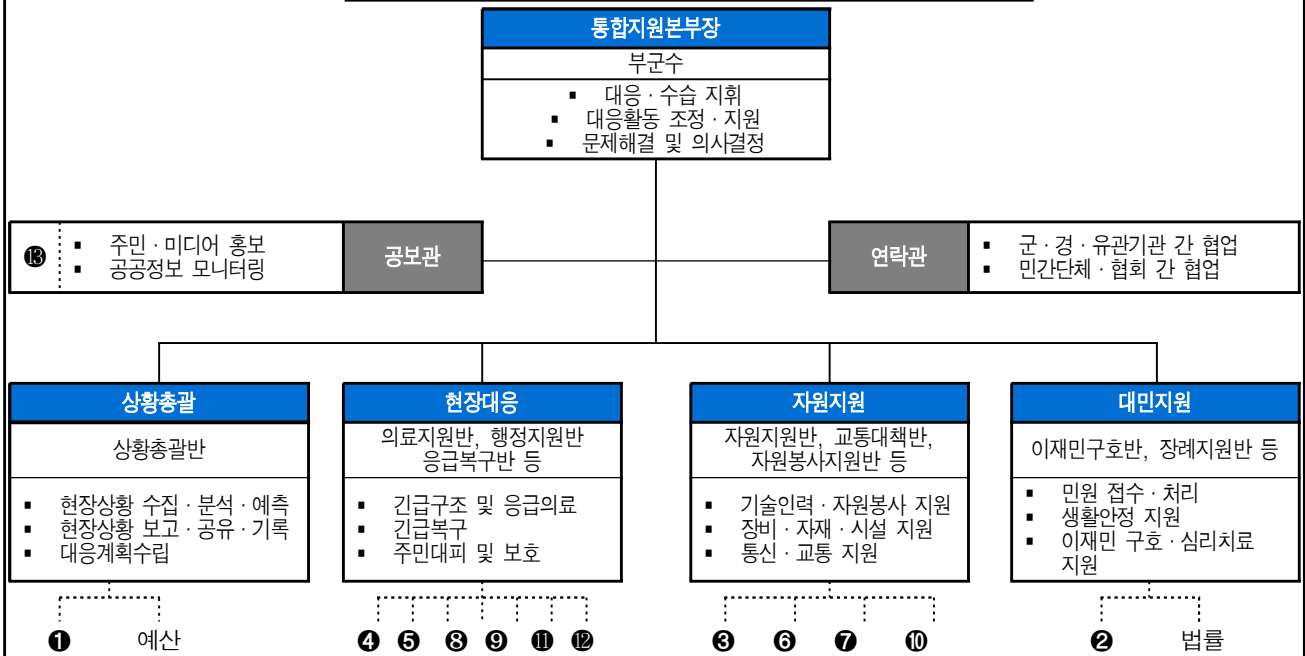
연번	구분	수습부서	주요임무와 역할	유관기관
1	상황관리총괄	안전총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총괄담당 업무 수행</li> <li>* 타 기능에 대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관리 제외</li> </ul>	
2	긴급생활지원	주민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 대책 지원</li> <li>● 이재민 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li> </ul>	
3	재난현장 환경정비	환경녹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화학물질, 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li> </ul>	
4	긴급통신지원	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두절 시설·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li> </ul>	KT 사천지점
5	시설응급복구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문화청소년과 체육시설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부서 담당 시설별(공공·사유) 응급복구 지원</li> </ul>	
6	에너지기능 복구	지역활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스, 전기, 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기능 회복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가스안전공사</li> <li>경남서부지사</li> <li>* 전기안전공사</li> <li>경남서부지사</li> <li>* 한미전력 남해지사</li> </ul>
7	재난수습홍보	기획예산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대처, 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li> </ul>	
8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안전총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재난물자계획, 관리·지원 및 적정상태 유지</li> </ul>	
9	교통대책	건설교통과 해양수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상·항공(건설교통과), 해상(해양수산과)</li> </ul>	
10	의료·방역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li> </ul>	
11	자원봉사관리	주민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li> </ul>	남해소방서
12	사회질서유지	남해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li> </ul>	
13	수색·구조·구급	남해소방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지역 구조, 구급 지원</li> </ul>	

### □ 재난관리기능의 임무 및 역할

(나) 주요재난별 안전관리체계

○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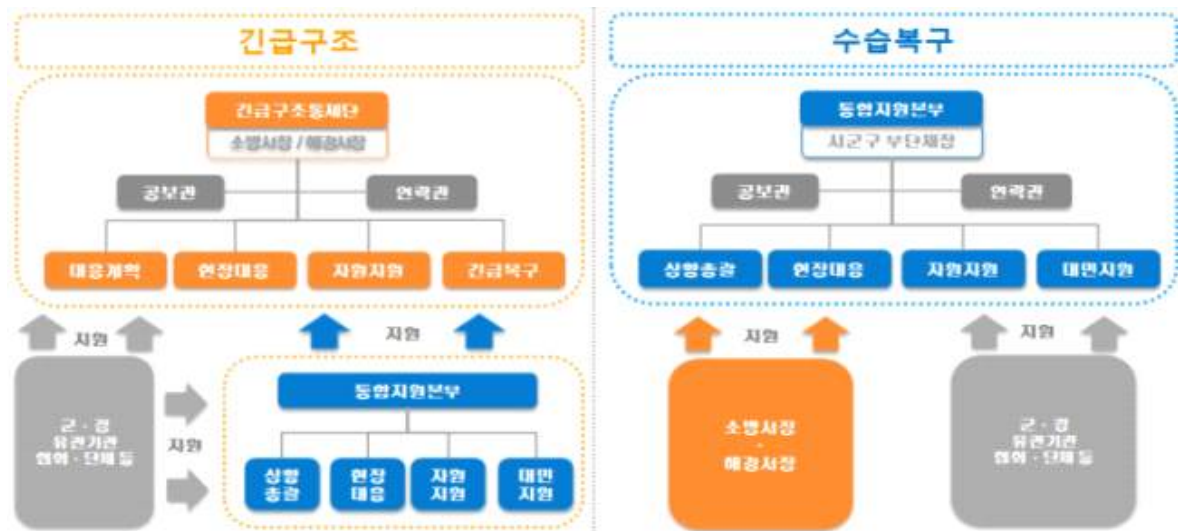
####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

- ① 상황관리
- ② 생활안정지원
- ③ 통신지원
- ④ 시설피해 응급복구
- ⑤ 에너지 시설복구
- ⑥ 자원지원
- ⑦ 교통대책
- ⑧ 의료·방역
- ⑨ 환경정비
- ⑩ 자원봉사
- ⑪ 사회질서유지
- ⑫ 수색·구조·구급지원
- ⑬ 홍보

#### < 재난현장 지휘 및 협업체계 >



※ 통합지원본부 조직도 등은 재난의 유형과 확산추이에 따라 변동 가능

○ 유관기관 주요 역할·임무

기관.부서	임무와 역할
남해소방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구조통제단 구성·운영</li> <li>- 긴급구조관련기간의 긴급구조활동 통합·조정</li> </ul>
남해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통제, 우회도로 확보 등 교통대책</li> <li>- 사상자 신원확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확보 등 초동수사</li> </ul>
제8962부대 2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명구조 활동 지원(인력, 장비)</li> </ul>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시설, 가스시설 안전점검</li> </ul>
한국전력남해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력설비 복구인력 및 장비 현장투입 복구 시행</li> </ul>
KT남해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시설 복구인력 및 장비 현장투입 복구 시행</li> </ul>
남해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시설 보호 및 복구</li> <li>- 이재민학생 대책 - 공납금 면제 및 지원</li> <li>- 이재민 수용시설 지원</li> <li>- 방재교육 - 학생에 대한 방재교육 및 홍보</li> </ul>
부산기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상통보 및 특보 발표</li> </ul>
통영해양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상에서의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li> <li>- 대규모 해양오염시 방재작업 협조</li> </ul>
한려해상국립공원 관 리 사 무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서객 대피</li> <li>- 기상상황 홍보</li> </ul>



나.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남해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등	2004. 12.30	안전기획팀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4. 12.30.	안전기획팀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및 실무위원회 등	2005. 10.04	안전기획팀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상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2005. 12.12	안전기획팀
남해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사항 규정	2013. 05.08.	안전기획팀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 규정	2014. 02.28.	안전기획팀
남해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15. 12.28.	안전기획팀
남해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민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활동 규정	2017. 06.30	안전기획팀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2005. 12.29	방재복구팀
남해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위원회 운영 조례	남해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19. 06.18	방재복구팀
남해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거주 건축·형질변경 행위제한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15. 10.02	방재복구팀
남해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진발생시 여진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시 필요한 사항 규정	2017. 11.10	방재복구팀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주부민방위 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2015. 12.04.	민방위팀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통합지휘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07. 04.09.	민방위팀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 현황	관리 주체	지정 일자	조치한 사항	비고
송신소	KBS 망운산송신소	통제실	KBS 순천방송국	1978.01.	철조망 CCTV 설치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 재난방지시설의 정비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2019년 사방댐사업 (남해남면상가지구)	남면 상가리 산172	저사형 큰돌사방댐	2019.3.7. ~ 6.4.	271	사방댐 신설
2019년 사방댐사업 (남해삼동봉화지구)	삼동면 봉화리 산502	저수형 콘크리트 사방댐	2019.2.25. ~ 5.27.	289	사방댐 신설
2019년 사방댐사업 (남해창선광천지구)	창선면 광천리 산118	저사형 큰돌사방댐	2019.3.7. ~ 6.4.	215	사방댐 신설
아산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사면정비 L=380m, H=15m, 비탈면 녹화 A=9,311㎡	2018. 1 ~2019. 12	2,600	사면정비
평산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남해군 남면 평산리	월파방지공 L=75m, TTP보강 572개, 방파제 손상 L=66m	2019. 1 ~2019. 12	1,800	침수차단 시설설치
정거소하천 정비	이동면 정거마을	소하천 정비 L=2.25km	2016. 1 ~ 2021.12	9,184	재해예방
초전 및 갈화마을 하수처리 시설 설치	1. 미조면 초전마을 2. 고현면 갈화리	1. 초전 하수처리장 90㎡/일 하수관로 4.7km 2. 갈화 하수처리장 115㎡/일 하수관로 4.3km	2017. 1. ~ 2020.12.	9,214	하수처리 시설 설치

# 남 해 군 공 보

(50) 제 660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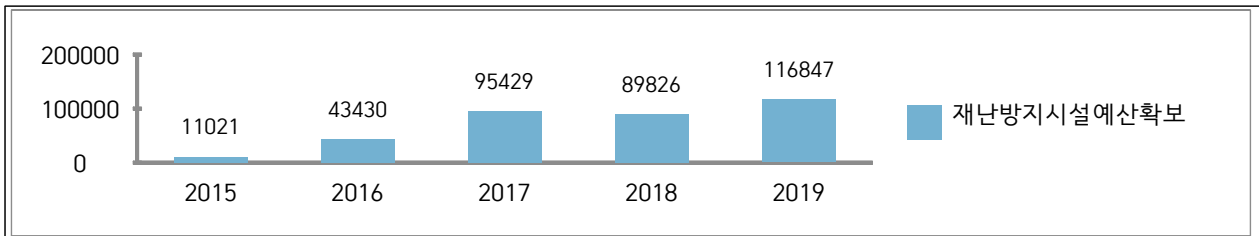
2020년 3월 31일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원예예술촌 (둔촌)하수 처리시설 설치	삼동면 동천리 (동천, 내동천, 화암, 둔촌, 화천, 금천)	1. 동천 하수 처리장 185㎡/일 하수관로 4.4km 2. 둔촌 하수 처리장 80㎡/일 하수관로 2.9km	2017. 1. ~ 2020.12.	10,342	하수처리 시설 설치
미FDA수출 용 패류생산해 역 하수처리장	남해군 이동, 삼동, 고현, 설천, 창선면	·하수처리시설 8개소 ·하수관로 45.3km	2018. 1. ~ 2022.12.	45,265	하수처리 시설 설치
회룡노구곤유 하수처리시 설 설치사업	남해군 서면 회룡, 정포, 노구, 유포, 창선면 곤유, 당항	·하수처리시설 3개소 ·하수관로 17.8km	2020. 1 ~ 2022.12	21,129	하수처리 시설 설치
광천소하천 정비	창선면 광천마을	소하천 정비 L=2.1km	2016. 1 ~ 2021.12	3,380	재해예방
덕신소하천 정비	설천면 감암마을	소하천 정비 L=2.1km	2018. 1 ~ 2022.12	11,100	재해예방
전골들 정비	상주면 금양마을	소하천 정비 L=1.0km	2019.12 ~ 2022.12	2,058	재해예방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	11,021	43,430	95,429	89,826	116,847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 재해예방사업 급경사지 등 사업예산 증가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과 장비 및 인력의 지정

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방재물자]

구분	계	오일펜스	유흡착제	흡착물
		m	g	g
총계	571,355	2,795	488,560	80,000

[의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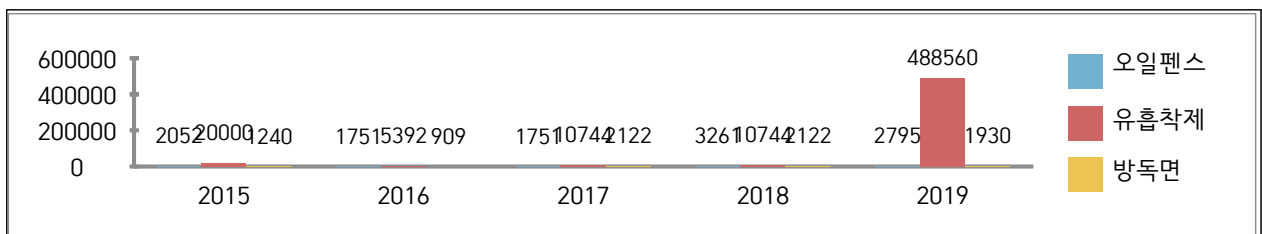
구분	개소	의사	간호사	구급차	병상수	영안실
합계	2	12	21	3	135	0
병원	1	10	17	1	135	0
보건소	1	2	4	2	0	0

[수용시설]

구분	합계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기타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총계	54	21,154	11	14,108	34	2,450	52		9	4,596		

◇ 방재물자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방재물자 종류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오일펜스(m)	2,052	1,751	1,751	3,261	2,795
유흡착제(g)	20,000	5,392	10,744	10,744	488,560
방독면	1,240	909	2,122	2,122	1,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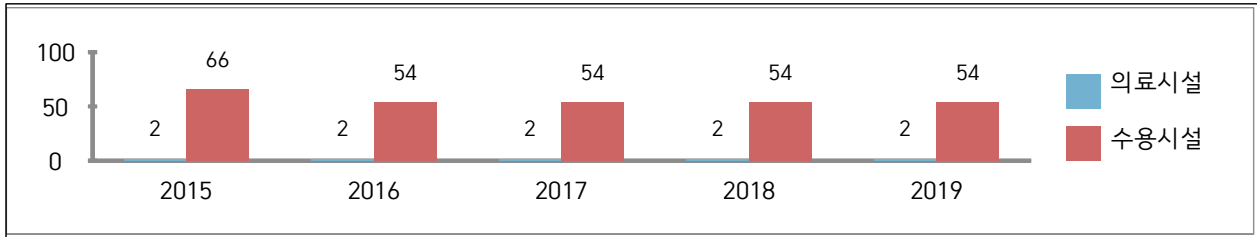


☞ 증감원인

- 방재작업용 유흡착제 보유량 증가

◇ 의료시설 및 수용시설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의료시설 수		2	2	2	2	2
수용시설	개소	66	54	54	54	54
	수용인원	29,952	21,153	21,153	21,153	21,154



☞ 의료 및 수용시설 지정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 설명  
- 변동사항 없음

나. 장비 지정

[구조장비]

구분	계	구급차	구조선	들것	구명조끼	구명환
총계	67	1	1	2	25	38

[복구장비]

구분	계	크레인	굴삭기	불도저	덤프	페이로더
총계	44	0	29	0	13	2

[산불진화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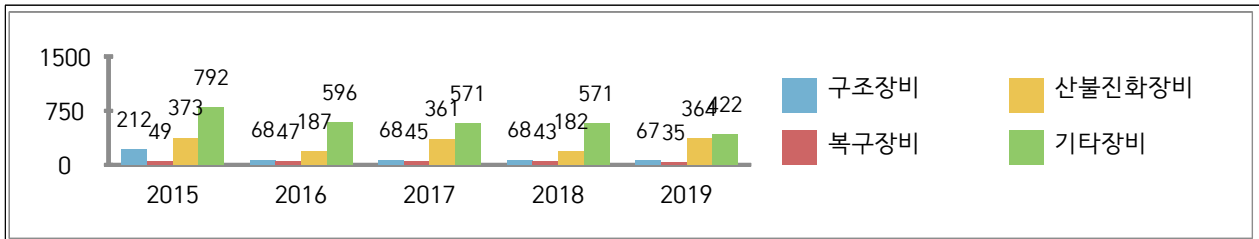
구분	계	산불진화차	탱크트럭	덤프트럭	지게차	등짐펌프
총계	264	5	16	15	1	227

[기타장비]

구분	계	용접기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무전기	엔진펌프	천공기
총계	422	2	97	120	170	32	1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구조장비	212	68	68	68	67
복구장비	49	47	45	43	44
산불진화장비	373	187	361	182	264
기타장비	792	596	571	571	422



- ☞ 장비지정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 설명
  -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계획 등으로 관리 철저
- 다. 인력 지정

[기술인력]

구분	계	토목	건축	환경	전기	가스	통신	화공
인원	6	3	3					

[기능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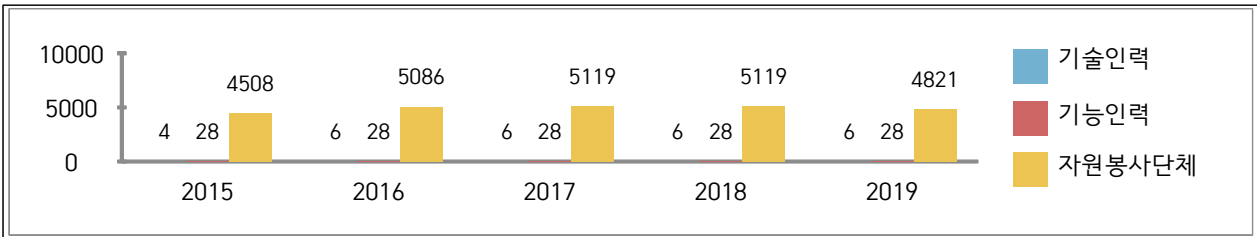
구분	계	전기공	기계공	통신공	용접공	철근공	중기 운전	중기 정비	기타
인원	28	5	1	3	2	-	11	4	2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구분	계	특수단체 및 개인					봉사단체 및 개인					
		의용 소방대	산악 구조대	수중 구조대	아마추어 무선 봉사대	기타	적십자 봉사대	새마을 부녀회	해병 전우회	모범운전자회	여성단체협의회	기타
인원	4,821	527	-	140	204	-	260	227	32	42	2,225	1,164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기술인력	4	6	6	6	6
기능인력	28	28	28	28	28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4,508	5,086	5,119	5,119	4,821



☞ 감소원인

- 자원봉사 단체, 특수단체 등 인원 감소

⑧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

- 대상 : 재난관리 실태점검, 소화천정비, 여름철 물놀이 실태 확인, 수해복구사업 추진, 재해구호물자, 폭염대비 등
- 점검·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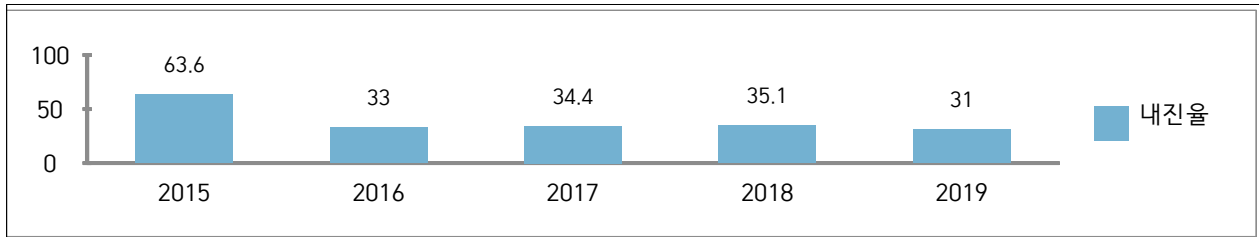
점검·평가 명	점검·평가일시	점검·평가 주관기관	점검·평가 결과	비고
재난관리실태평가	'19.01.14	행정안전부	보통	

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시설물별	내진설계 대상(①) (동수, 시설물 수)	내진설계 적용 +내진성능확보+ 내진 보강 실적(②) (전년도 까지)	2019년 내진보강 실적		내진율(%) (②+③)/①× 100
			동수(시설수) (③)	투자사업비 (백만원)	
일반건축물	32	16	0	0	50
도로시설물	10	1	0	0	10
수도시설	10	1	0	0	10
폐기물처리	4	0	0	0	0
공공하수	4	0	0	0	0
병원시설	1	1	0	0	100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내진율	63.6	33	34.4	35.1	31



☞ 내진실적 및 내진율의 증감원인

- 지진재해 대비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예산 미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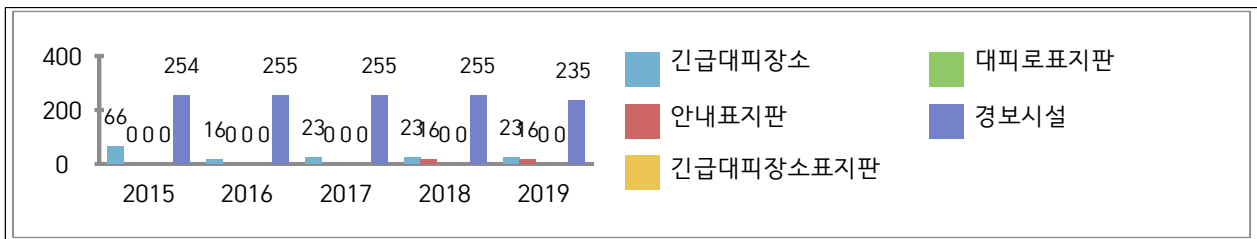
다.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지구별	긴급대피장소 (개소)	표지판(개)			경보 시스템 (개소)
		계	안내표지판	대피장소 표지판	
옥외대피소	16	16	16		235
실내구호소	7	7	7		



◇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긴급대피장소(개소)		66	16	23	23	23
표 지 판	안내표지판				16	16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					
경보시설(개소)		254	255	255	255	235



☞ 지진대피장소 증감원인

- 옥외대피가 가능한 장소 선정
- 불량 안내표지판 등 16개소 신설 설치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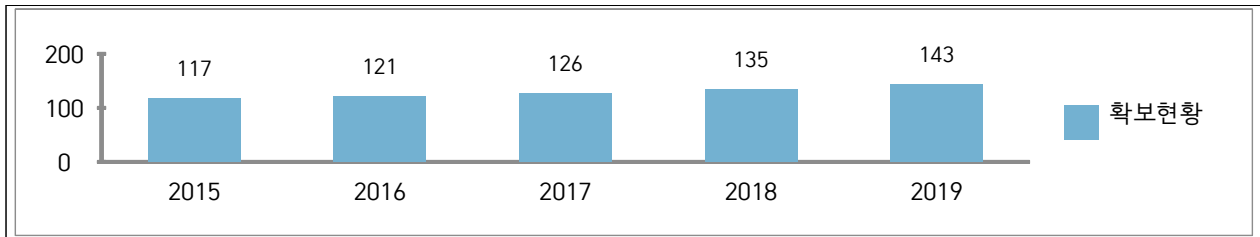
[재난관리기금 적립]

법정적립기준	당해 연도 확보기준액(①)	확보액(②)	확보율 (①/②×100)
143백만원	143백만원	143백만원	100%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확보액		117	121	126	135	143
사 용 액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85	107	129	171	406
	재해저감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29	122	200	17	35
	재난피해시설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7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유자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32		50		23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 법정적립기준액 100% 확보
- 2019년의 경우 총 7개 기금사업 추진으로 당초 수립한 계획대로 대체로 목표를 달성하여 재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였음.
-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주민대피 및 응급복구를 위해 읍·면 소재지를 횡단하는 지방 하천 내 재난 상황유지를 위한 CCTV를 설치하였음
-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차교체 사업 추진으로 중앙 및 도에서 면소재지까지 실시간으로 상황전파가 되는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어촌 경보발령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음.
- 폭염에 대비하여 무더위쉼터에 쿨링용품 및 생수를 지원하였을 뿐 아니라, 한파에 대비하여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고 한파쉼터 간판을 교체하는 등 시설을 정비하였음
-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필요한 방역복 및 소독약품 구입을 지원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농어촌 버스 공기정화필터 장착사업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 및 버스이용자의 쾌적한 승차환경조성에 기여하였음
- 전체적으로 불 때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형성액이 7억원선으로 예산 규모가 적은편이므로 기금적립액 증액 및 도 기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운용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할 것임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현황**

[시군구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등 총괄 현황]

행동매뉴얼 명	소관 국 또는 과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풍수해	안전총괄과	2019	풍수해재난 대응
지진	안전총괄과	2019	지진재난 대응
대형화산폭발	안전총괄과	2019	대형화산폭발 재난 대응
적조	해양수산과	2019	적조재난 대응
조수	해양수산과	2019	조수재난 대응
가뭄	안전총괄과	2019	가뭄재난 대응
산불	환경녹지과	2019	산불재난 대응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환경녹지과	2019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재난 대응
대규모 수질오염	환경녹지과	2019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 대응
대규모 해양오염	해양수산과	2019	대규모 해양오염 재난 대응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안전총괄과	2019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재난 대응
해양선박사고	해양수산과	2019	해양선박사고 재난 대응
사업장대규모 인적사고	지역활성과	2019	사업장대규모 인적사고 재난 대응
다중밀집 건축물붕괴 대형사고	도시건축과	2019	다중밀집 건축물붕괴 대형사고 대응
가축질병	농축산과	2019	가축질병사고 대응
감염병	보건소	2019	감염병사고 대응
전력	지역활성과	2019	전력사고 대응
보건의료	보건소	2019	보건의료사고 대응
식용수	상하수도사업소	2019	식용수사고 대응
육상화물운송	건설교통과	2019	육상화물운송사고 대응
가스	지역활성과	2019	가스사고 대응
저수지붕괴	건설교통과	2019	저수지붕괴사고 대응
문화재	문화청소년과	2019	문화재사고 대응
폭염	안전총괄과	2019	폭염 대응
한파	안전총괄과	2019	한파 대응
위험물	안전총괄과	2019	위험물 사고 대응
미세먼지	환경녹지과	2019	미세먼지 대응

[시군구 행동매뉴얼 개정 현황]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고
풍수해	안전총괄과	2019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사항 반영(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지진	안전총괄과	2019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사항 반영(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대형화산폭발	안전총괄과	2019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사항 반영(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적조	해양수산과	2019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사항 반영(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조수	해양수산과	2019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사항 반영(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가뭄	안전총괄과	2019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사항 반영(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산불	환경녹지과	2019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사항 반영(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환경녹지과	2019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사항 반영(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대규모 수질오염	환경녹지과	2019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사항 반영(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대규모 해양오염	해양수산과	2019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사항 반영(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안전총괄과	2019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사항 반영(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해양선박사고	해양수산과	2019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사항 반영(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사업장대규모 인적사고	지역활성과	2019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사항 반영(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다중밀집 건축물붕괴 대형사고	도시건축과	2019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사항 반영(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가축질병	농축산과	2019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사항 반영(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감염병	보건소	2019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사항 반영(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전력	지역활성과	2019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사항 반영(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 남 해 군 공 보

(60) 제 660 호

2020년 3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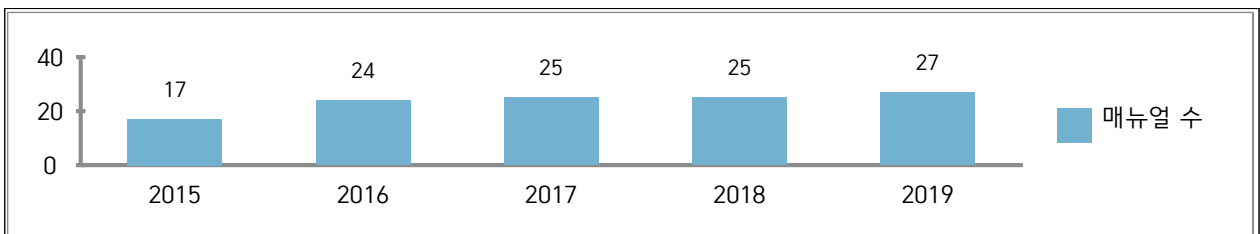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고
보건의료	보건소	2019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사항 반영(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식용수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사항 반영(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육상화물운송	건설교통과	2019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사항 반영(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가스	지역활성과	2019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사항 반영(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저수지붕괴	건설교통과	2019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사항 반영(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문화재	문화청소년과	2019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사항 반영(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폭염	안전총괄과	2019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사항 반영(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한파	안전총괄과	2019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사항 반영(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위험물	안전총괄과	2019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사항 반영(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미세먼지	환경녹지과	2019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사항 반영(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시군구 행동매뉴얼 숙달 훈련 실시 현황]

행동매뉴얼 명	훈련일시	주요 훈련내용	훈련결과 개선내용	비고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0.28	다중이용시설 화재대피 훈련	보통(B등급)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매뉴얼 수	17	24	25	25	27



☞ 행동매뉴얼 수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 설명

- 초미세먼지, 한파, 폭염 등 매뉴얼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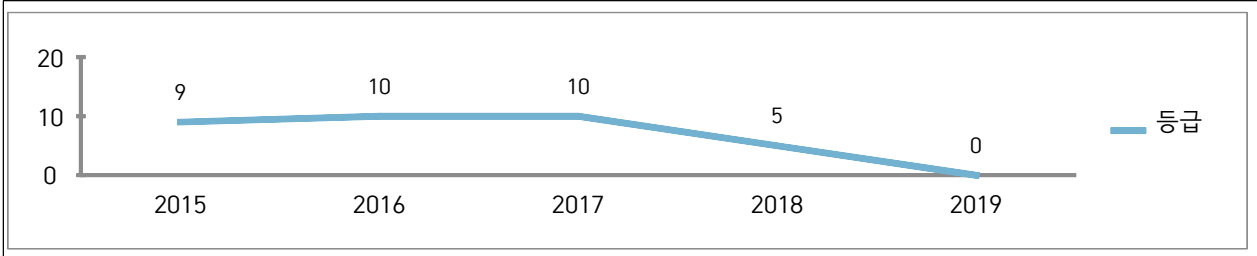
**5)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진단분야별 점수]

구 분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등 급(그룹)
진단결과	0.457	0.988	0.618	5(다)

◇ 연도별 등급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등 급	9	10	10	5	해당 없음



☞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등급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잠재적인 재해발생 가능성 및 환경적 위험도 감소(0.486→0.457)
- 재해저감을 위한 행정적인 노력도 향상(0.600→0.988)
- 지역의 구조적인 재해방어능력 향상(0.083→0.618)

**6)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 ☞ 피보험자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 ☞ 보 험 료 : 남해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 ☞ 보험기간 : 2020. 3. 1. ~ 2021. 2. 28.
- ☞ 보장내용 : 화재, 폭발, 교통사고, 일사병 등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 ☞ 보 험 사 : NH농협손해보험 (1644-9666)

**♣ 공시 관련 문의사항 및 의견 제출은 남해군 재난안전과 (담당자 : 김혜주, 전화 : 055-860-3425)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0 - 443호

##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숙박시설용지 민간사업자 공모

남해군 미조면 조도에 시행중인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의 민자숙박시설 용지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26.

남 해 군 수

□ 공 모 명 :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숙박시설용지 민자공모

### □ 사업개요

- 위 치 : 남해군 미조면 조도, 호도
- 사업기간 : 2014년 ~ 2020년(7년)
- 사업내용 : 조도 78,774㎡(약 23,870평)
  - 조도 : 다이어트센터, 치유의 숲, 탐방로(Blue Load), 전망쉼터 등
  - 호도 : 탐방로(Sky Walk), 전망대, 명상원, 접안시설 등
  - 민자 : 숙박시설(면적 : 18,723㎡, 약5,673평)
- 사 업 비 : 205억원(국비95, 도비 28, 군비 82), 토지보상비 30억 포함

## □ 공모개요

- 공모내용 : 조도 개발구역내 민자숙박시설 건설+다이어트센터 운영
- 면 적 : 30필지 18,723㎡(5,673평)

## &lt;다이어트센터 건축개요&gt;

- ▲ 건축면적 : 1,473㎡(약446평) 지하1층, 지상 3층
- ▲ 연면적 : 2,786㎡(약844평)
  - 지하1층 : 396㎡(기계실, 전기실, 수처리실)
  - 지상1층 : 921㎡(웰컴센터, 매표소, 관리운영본부, 실내스파)
  - 지상2층 : 1,030㎡(휘트니스, 탈의실, 체질진단센터, 영상교육실, 테라피센터)
  - 지상3층 : 438㎡(식당, 카페)

- 토지의 취득가액 : 471백만원, 평균가 83천원/평
- 허가조건 : 건폐율 20%이하, 용적율 60%이하(4층이하)
- 공모일정 : 2020. 3. 26. 공고
- 공모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일간지에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공모
- 공모기간 : 2020. 3.26.~2020.5.15.(50일간)
- 신청자격 : 단독 법인 또는 컨소시엄(2개 이상의 법인)
  - 자본금 3억원 이상,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직접운영업체
  - ※ 단독 신청시 사업자구성(절대평가항목 30점)을 제외한 470점중 376점 이상 획득 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그 밖의 세부신청자격은 공모지침서를 따름

## □ 추진일정

- 사업설명 : 개별방문
  - 기간 : 2020. 3.26.(목) ~ 4. 1.(수) 18:00까지
  - 장소 : 남해군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
- 사업참가의향서(서식24) 제출
  - 기간 : 2020. 4.13.(월) ~ 4.17.(금) 18:00
  - 장소 : 남해군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FAX(스캔본 이메일 가능)
    - fax : 055-860-3748, 이메일 kimyk77@korea.kr
    - (송부후 ☎055-860-8613, 김연경 주무관)으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필요
    - \* 사업참가의향서를 기한 내 제출한 법인에 한하여 사업제안서 제출가능
- 질의/응답 : 질의 접수기한 2020년 4월 17일(금) 18:00까지
  - 질의사항은 서면질의서(서식 22)를 이용하여 이메일 및 팩스를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송부 후 유선으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fax : 055-860-3748, 이메일 kimyk77@korea.kr



-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가의향을 제출한 전부에게 일괄 공지합니다.  
질의/응답내용은 지침의 효력을 가짐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평가 : 사업신청자에게 일정 별도 통보
- 사업신청서류 접수  
가. 일시 : 2020년 5월 15일(금) 09:00 ~ 18:00  
나. 장소 :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남해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기타

- 사업계획서는 공모지침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미제출한 업체의 책임입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선정에 상관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평가결과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 제출자는 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모지침서에 따르며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남해군의 결정에 의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0 - 450호

##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5일

남 해 군 수

1. 자치 법규명 :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개정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 자동차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 조문 등을 정비코자 함.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서민생활지원을 위하여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

### 3. 주요 내용

-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 범위를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포함함(안 제2조)
- 나. 외국인투자를 위한 감면 제목을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상위법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함(안 제7조)
- 다.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안 제10조의2)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4일까지 남해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지서식 참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남해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주소 : 우)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연락처 : 055-860-3462 (팩스 055-860-3705)

※ 붙임 1. 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를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으로,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을 “장애인과 동일한”으로,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를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로써 그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을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을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을 “법 제78조의3제1항”으로,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3항”으로,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을 “법 제78조의3제1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를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로,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를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 을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를 말한다)를 인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2020년 7월에 부과하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제2항에 따른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기준일을 포함한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이전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율” 은 다음의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

임대료 인하율	감면율
100분의 5초과 100분의 10이하	100분의 10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15이하	100분의 15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0이하	100분의 20
100분의 20초과 100분의 25이하	100분의 25
100분의 25초과 100분의 30이하	100분의 30
100분의 30초과 100분의 35이하	100분의 35
100분의 35초과 100분의 40이하	100분의 40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45이하	100분의 45
100분의 45초과	100분의 50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인하율” 이란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에서 인하 기간 평균 월 임대료를 뺀 금액이 직전 월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개월 수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3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frac{(\text{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 \text{인하기간 평균 월 임대료})}{\text{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times \text{임대료 인하 월 수} \div 3$$

⑤ “월 임대료”는 보증금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text{보증금} \times \text{이자율} \div 12(\text{개월})$$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0조의2 신설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제10조의2 신설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19.6.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 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p>	<p>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장애인과 동일한 -----            --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로써 그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p>

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1. 2. (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7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그 후 3년간 100분의 30을 각각 경감한다.

-----.

1.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음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  
-----  
-----  
-----.

제7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  
---- 제3항-----  
----- 법 제78조의3제12항  
-----.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  
-----.



<신 설>

제10조의2(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를 말한다)를 인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2020년 7월에 부과하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제2항에 따른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기준일을 포함한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이전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의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

임대료 인하율	감면율
100분의 5초과 100분의 10이하	100분의 10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15이하	100분의 15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0이하	100분의 20
100분의 20초과 100분의 25이하	100분의 25
100분의 25초과 100분의 30이하	100분의 30
100분의 30초과 100분의 35이하	100분의 35
100분의 35초과 100분의 40이하	100분의 40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45이하	100분의 45
100분의 45초과	100분의 50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인하율”이란 임

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에서 인하 기간 평균 월 임대료를 뺀 금액이 직전 월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개월 수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3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frac{(\text{임대료인하직전월임대료} - \text{인하기간평균월임대료})}{\text{임대료인하직전월임대료}} \times \text{임대료 인하 월 수} \div 3$$

⑤ “월 임대료”는 보증금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text{보증금} \times \text{이자율} \div 12(\text{개월})$$

남해군 공고 제2020 - 460호

##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 제정이유

-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 전담기구 설립
- 관광콘텐츠 확충, 국내·외 마케팅 등 재단에서 수행 할 주요사업과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재단의 목적, 적용범위,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 나. 재단의 주요사업 규정 (안 제4조)
- 다. 재단의 운영을 위한 임원과 이사회 관련 규정(안 제5조~제9조)
  - 재단의 정관, 임원, 임원의 직무, 이사회, 직원에 대한 사항
- 라.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범위에서 출연·보조(안 제10조)
- 마. 재단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 가능(안 제12조)
- 바. 공무원의 파견, 공유재산사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안 제15조)
- 사. 보고·검사 및 감사,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안 제17조)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간 : 2020년 4월 15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경남 남해군·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 관광경제국 문화관광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8593 팩스 055-860-3748  
전자우편 cutespoon@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자우편, 직접 방문

5.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콘텐츠팀(☎860-859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남해군 관광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남해군 관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및 운영)** ① 재단은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사업
2.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사업
3.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사업
4. 관광 관련 공모사업, 관광업무 컨설팅
5. 남해군의 관광관련 위탁사업
6. 문화예술자원 개발 및 운영 등 문화콘텐츠 확충사업
7. 축제 기획 및 총괄 추진
8. 문화 관련 공모사업
9. 바래길 및 코리아둘레길 콘텐츠 개발 및 시설 관리
10.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한 사업
11.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

-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 운영
- 6.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 7. 예산과 회계
- 8. 정관의 변경
- 9. 해산에 관한 사항
- 10. 공고의 방법
-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 실무책임자로 본부장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군수가 된다.

③ 이사는 남해군 관광업무 담당과장을 포함하여 관광 및 문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감사는 행정·법률·회계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이사장이 임면한다.

⑤ 본부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 이사와 감사 및 본부장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이사회 의 권한과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재산출연·보조)**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기본재산 등) ① 재단의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 1. 출연금 및 보조금
- 2. 재단사업 수입금
- 3. 기부금 등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의 기본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보고·검사 및 감사) 군수는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매년 검사할 수 있으며, 재단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비용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출연금에서 이를 차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